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(안)

의 안 번 호 ⁹⁴⁵ 제출년월일 : 2012. 11.

제 출 자: 중구청장

1. 제안사유

○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3도 중구신청사 등건립기금설치및운용계획(안)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O 운용방침
 -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

O 기금현황

설치년도	설치목적	설치근거	비고
2008. 3.31	현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재원 확보		

O 기금운용계획

(단위: 천원)

		수	입 겨	획					지 출	를 계 획	(2)	1
계	전입 금	보조금	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예치 금회 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비용자 성사업 비	융자 성 사업 비	인력운영 비 및 기본경비	예치금	기타 지출
2,653, 633				2,414, 166	239,4 67		2,653,63 3				2,653,6 33	

O 기금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2012도 말	2013도 기	금운용계획	2013년도 말	고 가
전재액 @	수입 (b)	지출 ⓒ	현재액 (d=@+(b)-(c)	증 감 ①-@
2,414,166	239,467	0	2,653,633	239,467

3. 내 , 용

○ 별 첨 【2013년도 중구신청사등건립기금설치및운용계획(안)】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945)

1. 의안명 : 201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2. 11. 12(월) · 중구청장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11. 13(화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11. 30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이상수 행정지원국장) 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거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·운용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 □ 운영규모

(단위: 천원)

							<u> </u>
	수	입			지	출	
항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	항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계	2,653,633	6,414,166	△3,760,533	계	2,653,633	6,414,166	△3,760,533
예치금 회수	2,414,166	6,330,810	△3,916,644	예치금	2,653,633	2,414,166	239,467
이자수입	239,467	83,356	156,111	기타지출		4,000,000	△4,000,000

5. 검토의견

- □ 관련법령검토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제7조에 따르면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,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 하도록 되어있음.

 -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 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.
- □ 제안내용
 - ▶ 본 건은 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적립 된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 운용계획을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 되었음.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